

1. 개정 이유

기존에 분리·운영되던 지하수 관련 시행규칙의 일원화, 국가측정망 정비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업무 구체화, 지하수 관련 업체의 영업실적 등 보고 절차 보완 등을 통해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에 따른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제도적 활용 기반 마련, 토지 굴착행위 사전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이행자 부담 완화, 물공급 취약지역 구체화 등을 통해 지하수 관련 인허가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편익을 강화하여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관련 시행규칙 일원화

그 간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분리·운영되었던 지하수 관련 시행규칙을 금번 개정 시에 통합함으로써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의 의미를 제고하고 분리·운영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

나.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안 제3조의3)

「지하수법」이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지하수 정보 관리와 관련된 센터의 추가 업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와 관련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역할을 기대함

다. 토지굴착행위 사전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이행 부담 완화(안 제6조, 제9조의4)

신고 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굴착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신고자 및 지자체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자가 굴착한 굴착공에 대한 굴착종료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복구계획서의 양식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

라.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및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9 별표5)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별지 서식, 보고 절차,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유출지하수 발생·이용계획 신고에 따른 수리 업무 및 개선명령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신고업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

또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을 규정하여 유출지하수를 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마.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10)

「지하수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등 지원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 공급 취약지역 해소에 기여

바. 지하수 측정시설 일원화(안 제29조)

지하수에 대한 국가측정망이 일원화됨에 따라 측정망 설치기준, 측정망 수 및 설치시기, 측정망의 운영·측정 방법 등 측정망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보전·관리에 기여

사. 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안 제48조)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련 ‘업’의 영업실적 등 보고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연보의 발간
2. 지하수 계획, 지침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
3. 유출지하수 활용 등에 대한 기술지원
4.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외에 지하수 정보 활용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2. 원상복구계획서(이 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상복구계획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

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2.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제9조의2제7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의2제2항”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전년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

획 현황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⑬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 공사 완료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제9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의3”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 후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원상복구할 대상이 없거나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다.

제9조의4제5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조의4제4항”을 “법 제9조의4제5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물공급 취약지역 등)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하여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 수자원 확보 등이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5호의3서

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3항”을 “영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제2항”을 “영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22조제5항”을 “영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기록·유

지하여야”를 “기록·유지해야”로 한다.

제21조를 제3조의2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

제28조의2를 제40조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2조로 하고,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25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이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기록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2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9조(측정망 운영 등) 법 제17조제7항, 영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변동실태조사를 위한 측정망의 설치기준·측정망의 수와 설치시기·측정망의 운영·측정방법 등 측정망의 설치와 운영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수질검사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세부 용도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제3조의2(중전의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8조제2항”을 “영 제6조의2제2항”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전의 제21조)의 제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통보)”를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26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3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종전의 제24조)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4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4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9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36조를 제49조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제35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

지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하여야 하며,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島嶼)·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34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4조(중전의 제31조)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4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을 “위해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9조(중전의 제28조)제3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4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41조(중전의 제29조)제1항 중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30조) 중 “등에 ㄷ”를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르고, 지하수정화업등록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45조(종전의 제32조) 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33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단, 4호는 제외)”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9.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10.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제47조(중전의 제34조)제1항 중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 제5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위반사항

의 결과를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와 같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한 수량과 수질이 확보된 지역

바.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적산유량계 등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마. 유출지하수는 강수량 및 주변 지역 지하시설물 개발 정도 등에 따라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이용 용도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 중 “20센티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

가. 지하수 유출량은 계절, 강수, 주변 지하시설물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는 필요한 적정 수량을 확보할 것.

나. 열교환기 내에 물리적,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추어 줄 것.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2호서식) 중 “「지하수법」 제17조제8항”을 “「지하수법」 제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하수법」 제8조제3항”을 “「지하수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하수법」 제9조제2항”을 “「지하수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을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

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부터 별지 제42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44호서식 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을 “「지하수법」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5호의3서식) 중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을 “「지하수법」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

25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4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5”를 “시행규칙 제37”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하수법」 제24조제3항”을 “「지하수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0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9”를 “시행규칙 제41”로 하고, 별지 제40호서식 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실적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일에 등록된지 2년 이상 경과한 업자는 짝수년도에 등록한 경우 동 규
칙 시행년도 12월말까지, 홀수년도에 등록한 경우 다음해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
다.

[별표 6] <지하수수질보전규칙 별표1에서 이동>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1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 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땅파기)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c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 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 1)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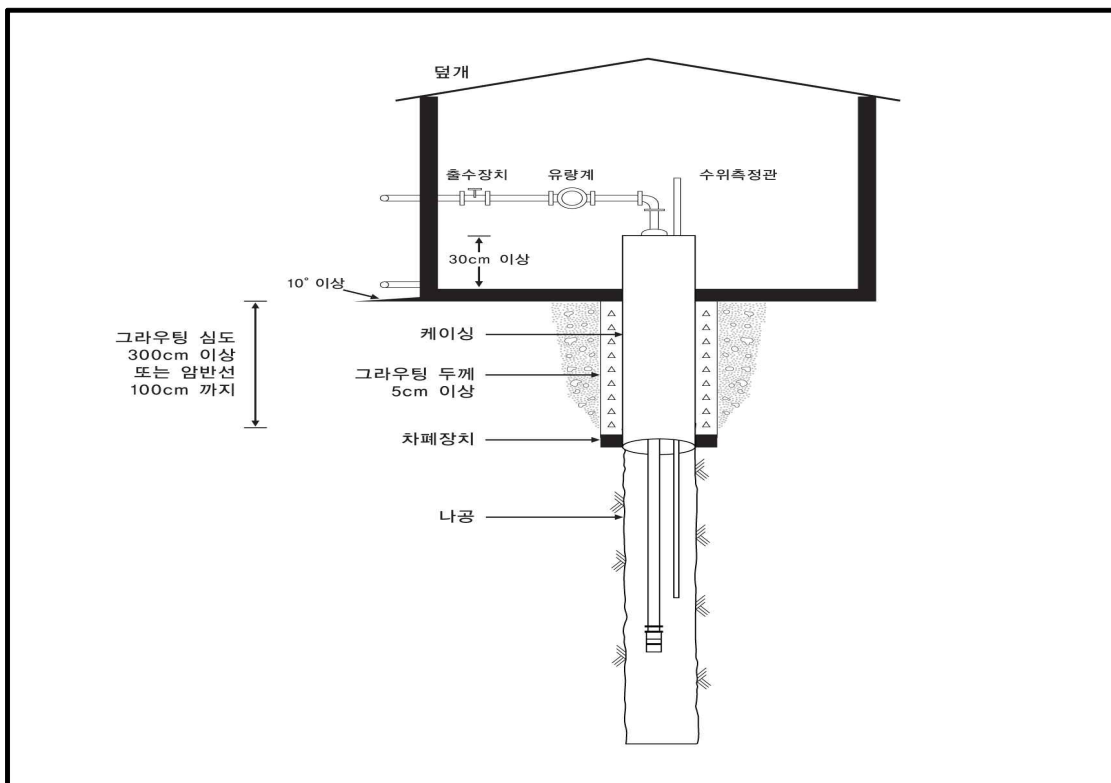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c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일반 상부보호공)의 구조도



※ 차폐장치는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

적용

라.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1)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가)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시험 결과 $5\text{kg}/\text{cm}^2$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text{kg}$ 의 하중, $10\text{mm}/\text{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text{kg}/\text{cm}^2$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4) 내·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지하수오염방지지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량·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가목4) 및 5)에 따른다.

[별표 7] <지하수수질보전규칙 별표2에서 이동>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23조의2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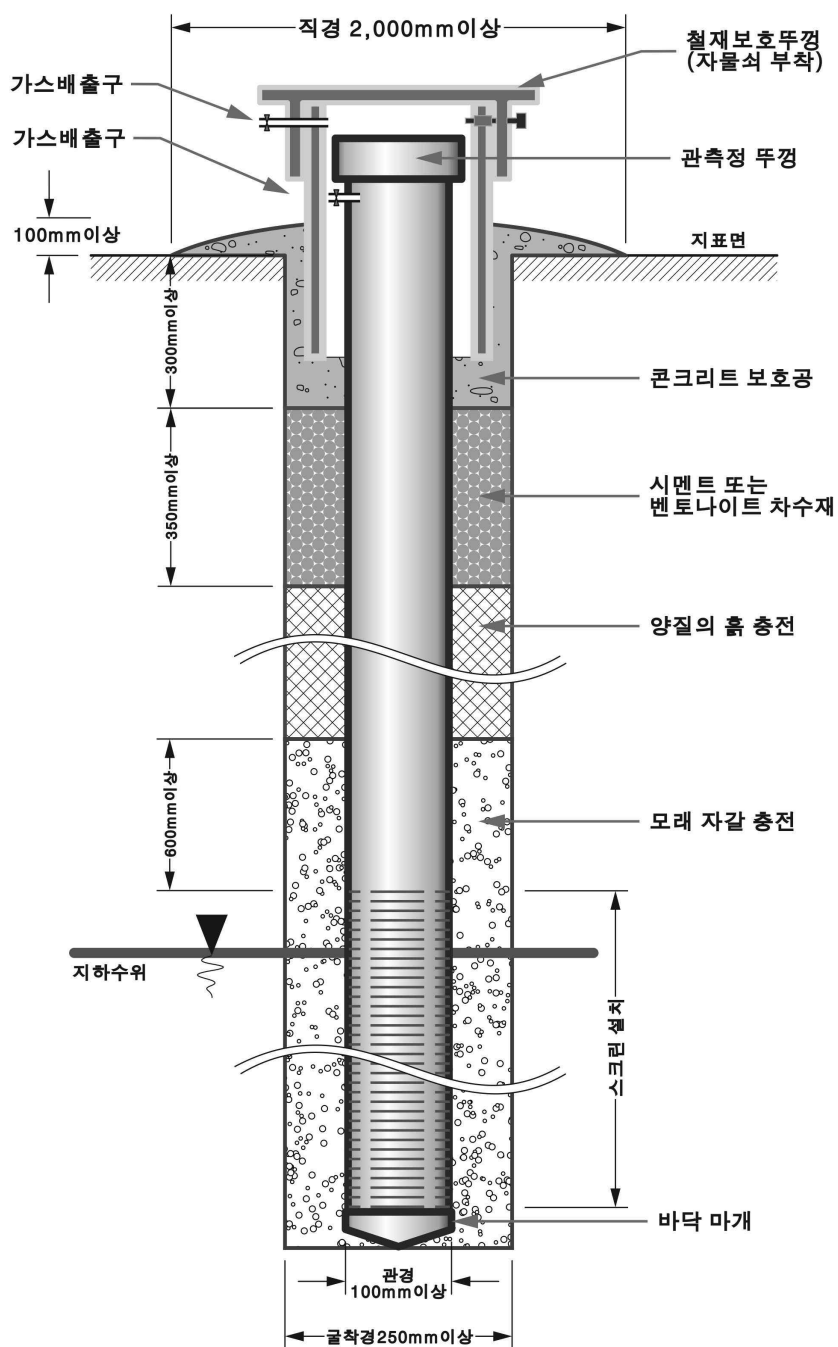
[별표 8] <지하수수질보전규칙 별표3에서 이동>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1. 별표 7 제1호 및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보호공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가 100mm 이상, 반경이 1,0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개 이상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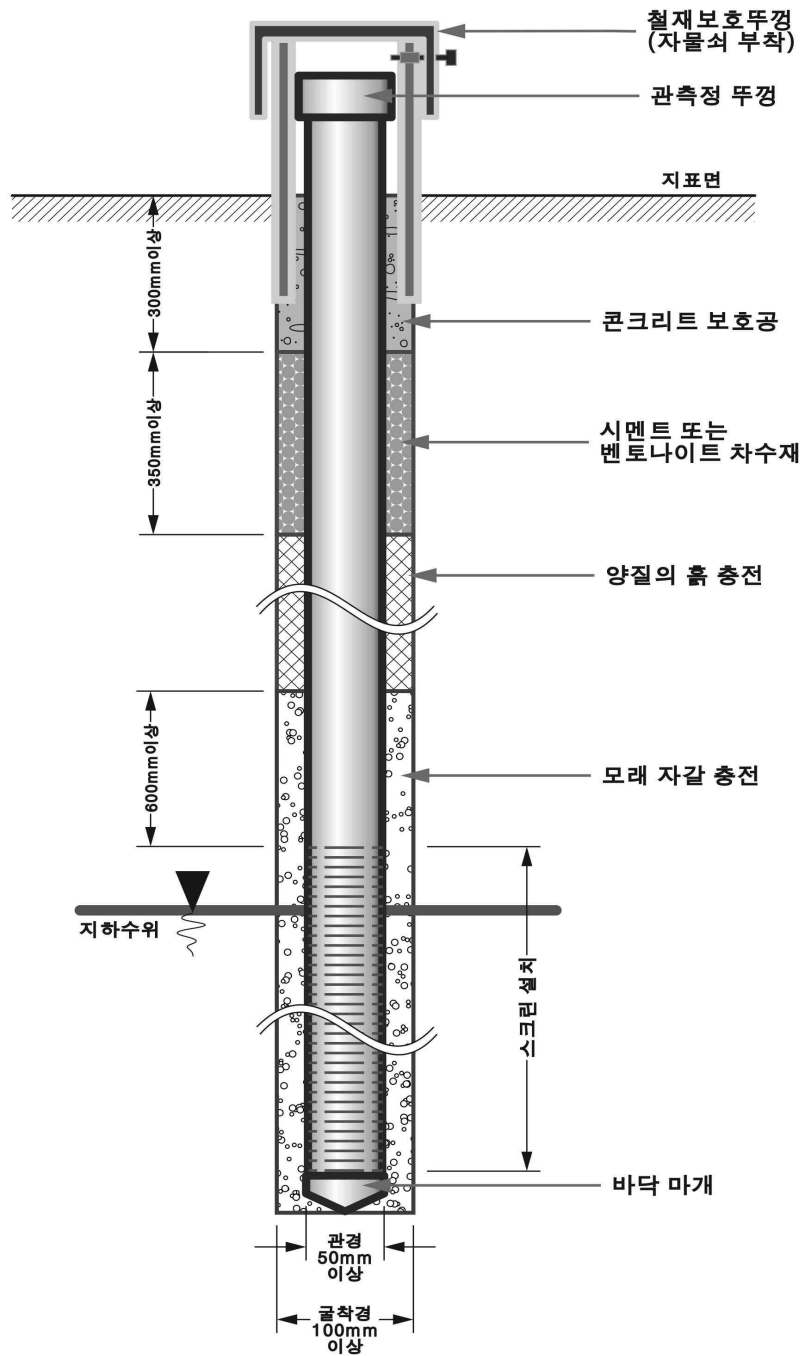
나. 수질측정의 항목·주기 및 방법

-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9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항목
- (2)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 (3) 측정방법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별표 7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측정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항목·주기 및 방법

-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2) 측정주기

-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계속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 (다)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측정방법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9] <지하수수질보전규칙 별표4에서 이동>

지하수의 수질기준(제35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항목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균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지하수 유출량 m ³ /일	유출 위치	
시설 공사 현황	착공일	준공예정일	
	시공사명	법인등록번호	
	시공사 주소 (전화번호:)		
	공사 위치(주소)		
	공사 개요		
	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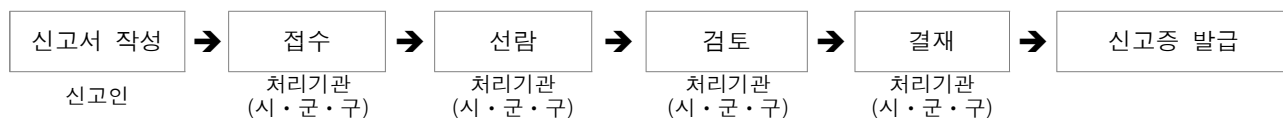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삭 제>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지하수 유출량 m³/일	유출 위치
시설 공사 현황	시공사명	법인등록번호
	시공사 주소 (전화번호:)	
	공사 위치(주소)	
	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이용계획 내용	유출 위치	용도	
	지하수 유출량 m³/일	이용계획량 m³/일	
	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시설공사 내용	시공업체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개요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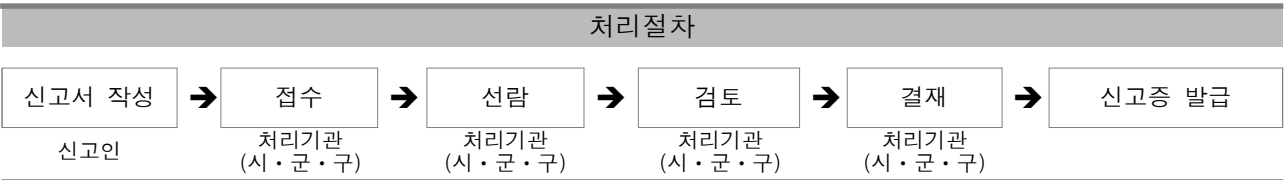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시·도·군·구)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계획현황

☐ 발생현황													
구 분			지하수 유출현황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시		개소수 (개소)											
		유출량 (m³/일)											
()군		개소수 (개소)											
		유출량 (m³/일)											
()구		개소수 (개소)											
		유출량 (m³/일)											

☐ 이용계획현황																
구 분			지하수 유출현황							지하수 이용현황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 시·군·구	전년 도	개소수 (개소)														
		유출/이용량 (m³/일)														
	누계	개소수 (개소)														
		유출/이용량 (m³/일)														

「지하수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계획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조치명령완료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보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보고내용	시설명	
	조치명령 완료내용	
	조치명령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④주소		
⑤사고개요	○ 일시 : 년 월 일 시 분(요일)		
	○ 장소 :		
⑥사고내용			
⑦사고원인			
⑧오염물질종류· 농도 및 누출량			
⑨피해우려예상 지역과 수질측정 지점			
⑩조치사항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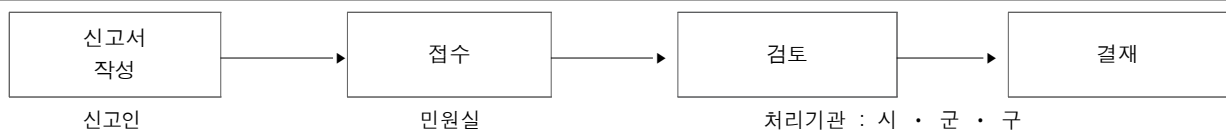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수질측정기록부 2. 오염사고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1. ⑤란은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오염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란은 오염사고가 나게 된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⑧란은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누출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⑨란의 지하수오염에 따른 피해우려예상지역과 지하수수질을 측정한 지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⑩란은 지하수오염 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수질측정기록부

(앞 쪽)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						
구분		관측정위치	상류지점		하 류 지 점	
			①	①	②	③
측 정 일 시						
지 하 수 위(m)						
외 관						
수 질 측 정 항 목 및 수 질 (mg/L)	일반 오염 물질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균수/100mL)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 유해 물질	카 드 롬				
		비 소				
		시 안				
		수 은				
		유 기 인				
		페 놀				
		납				
		6 가 크 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타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			측정결과 종합의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관측정 위치 : 지하수 주흐름방향의 상류지점, 하류지점의 관측정 위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2. 수질측정항목중 기타 : 검출가능 항목으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 : 관측정 설치자가 직접 측정한 경우에는 자가 측정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측정결과 종합의견 : 수질측정결과 기준 초과항목, 지하수위의 증감, 오염물질의 검출 또는 증가 등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부작성자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 매분기별로 기재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기재합니다.

시설종류	설치연도	오염물질종류	규모(용량)	기 타

지하수수질검사접수 · 처리기록부

연번	신청접수							시료채취 일시 통보					결 재		비고	
	접수 및 처리		신청인			관정정보		송신자		수신자						
	연월일	처리기한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위치	허가(신고) 번호	직급 또는 직책	성명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통보 내용	담당자	결재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앞쪽)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1. 시료 내용				
검사목적·근거				
지하수 용도		원수/정수 여부		
채취일		기타 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자	상호 또는 명칭	허가/신고 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위치				
2. 시료채취자				
소속		이름	(인)	

148mm×105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검사목적·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등 검사의 목적 및 근거가 되는 법령을 기록합니다. 2. 지하수 용도란에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 중 어느 하나를 기록합니다. 3. 원수/정수 여부란에는 시료가 지하수 원수인 경우에는 “원수”로, 지하수 원수를 소독 등의 정수 처리를 한 물인 경우에는 “정수”로 기록합니다. 4. 기타 사항란에는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시료인 경우 “재검사”로 기록하는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합니다. 5. 허가/신고 번호란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의 허가번호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의 신고번호를 기록합니다.
--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기관명					
수신:			발신:		
제목: <u>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u>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 내용					
접수 번호			접수일		
지하수 개발· 이용자	상호 또는 명칭		허가/신고 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위치					
검사목적·근거					
지하수 용도			원수/정수 여부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종합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앞쪽)

[illegible]

(뒤쪽)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illegible]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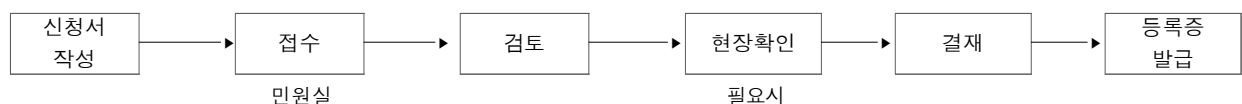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5만원 (변경등록은 3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

순 번	신청 일자	등록사항				시설 · 장비	행정처 분사항	등 록 증 발 급					비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또는 주소	기술 인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결재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담당	계장	과장	

제 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등록 조건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 구청장 직인		

지하수개발이용 · 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개인인 경우 성명	업 종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1. 영업실적

연도	구분	영업실적 (계약건수)	비용(원)	사업 위치	사업내용
					ex) 시공업(관정개발, 사후관리 등)

2.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능력		교육이수		입사 일자	퇴직 일자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과정명	기간		

3. 시설 · 장비 보유현황

시설 ·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임차 또는 자기소유	임차인 경우		보관장소	비고
				임차일	임차종료일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의 분야 란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등에 따라 기재합니다.
-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의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시군구 등의 영업실적 등 종합보고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영업실적 등 통보

「지하수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업종	대상 업체 수	영업실적(건수, 금액)		위반현황(건수)				처분현황(건수)		
		0000년	0000년	기술 인력	시설· 장비	교육 이수	기타	과태 료	고발	기타

붙임 : 업체별 세부 현황자료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업체별 영업실적 등 세부현황 자료

1.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 지	기술인력		교육이 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부		임차/ 자가	적/부	건수	비용	주요 내용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 지	기술인력		교육이 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부		임차/ 자가	적/부	건수	비용	주요 내용	

3. 지하수정화업자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 지	기술인력		교육이 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부		임차/ 자가	적/부	건수	비용	주요 내용	

원상복구계획서

[선택] 불용공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판정에 표시

구 분	소 형		대 형		재래식
충적층	유형1 ☐		유형2 ☐		유형3 ☐
암반층	케이싱인발 가능	유형4 ☐	전구간 되메움	유형6 ☐	—
	케이싱인발 불가	유형5 ☐	부 분 되메움	유형7 ☐	—

[예시] 유형별 원상복구 되메움 순서 및 모식도 (유형1 ~ 유형7)

○ 충적층 소형우물(유형1)

— 충적층 소형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변환경검토

불용공 재원조사

케이싱 제거

되메움 작업

주변정리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 유압재기 등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뽑아냄
-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 하거나 주변 흙으로 다짐하여 되메움
- 지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구경50mm내외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 충적층 대형우물(유형2)

— 충적층 대형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변환경검토

불용공 재원조사

케이싱 제거

되메움 작업

주변정리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 유압재기 등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케이싱 인발 제거
- 공 내부가 오염된 경우 물을 양수하고 우물소독
-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 하거나 자연함몰이 안될 때 대수층구간은 깨끗한 모래, 자갈로 채우고 상부는 점토 또는 주변 흙으로 되메움
- 지표면 최상부는 주변 흙으로 직경60cm 높이 20cm 정도의 돔형 다짐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구경150mm 이상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 재래식 우물(유형3)

— 충적층 재래식 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변환경검토

불용공 재원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및 우물소독

투수성재료 주입

주변정리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 우물의 심도, 구경, 지하수위, 우물내 퇴적물조사
- 우물 내 이물질 완전 제거
- 우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물을 양수한 후 우물소독 실시
- 우물 보호층 제거
- 대수층 구간에 모래 및 자갈로 충전
- 모래·자갈 충전 상부구간에 점토 또는 주변 토양으로 다짐하며 되메움
- 지표 상부구간에는 주변 토양으로 직경 1.5m, 높이 30cm 정도의 돔형으로 되메움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우물 보호층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리

구경100mm이상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 암반층 소형우물

— 케이싱 인발 제거시 되메움 순서(유형4)

주변환경검토

불용공 재원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불투수성재료 주입

케이싱 제거

지표부 표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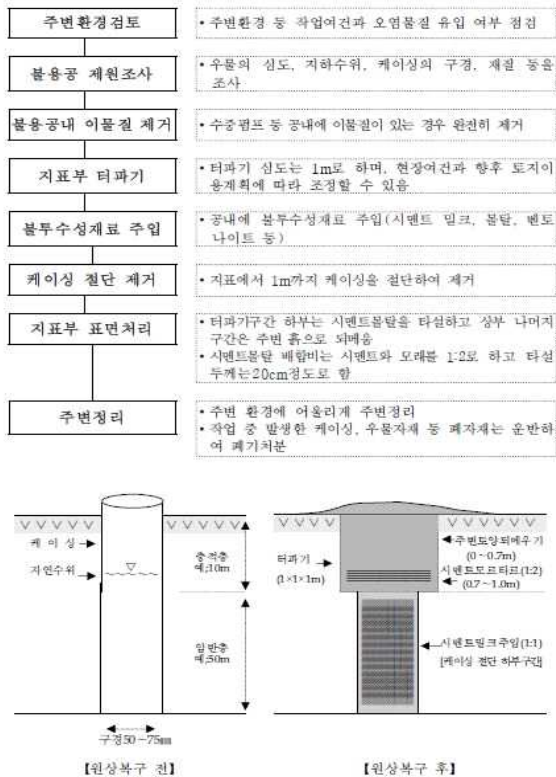
주변정리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 수증펄드 등 공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완전히 제거
- 암반 대수층구간(또는 케이싱 미설치 하부구간)에 불투수성 재료 주입(시멘트, 몰탈, 벤도나이트 등)
- 유압재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 인발
- 충적층의 공 내부가 자연 함몰되게 하거나 주변 흙으로 되메움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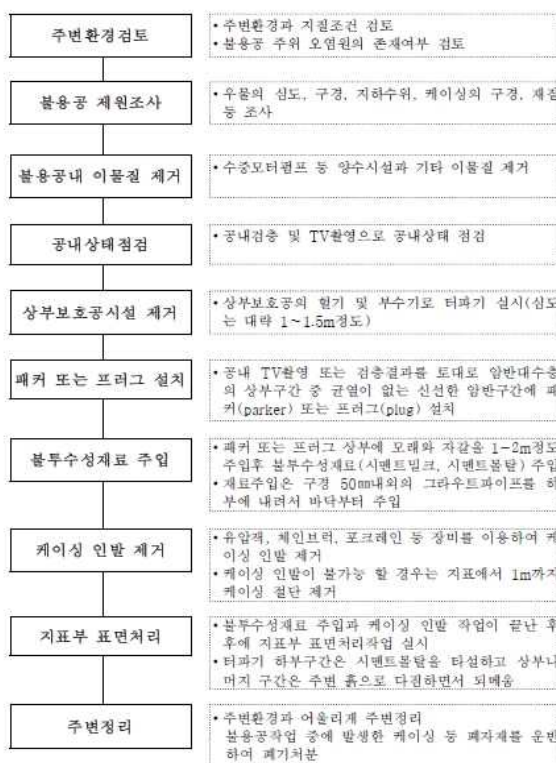
구경30 ~ 75mm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 케이싱 인발 불가시 되매움 순서(유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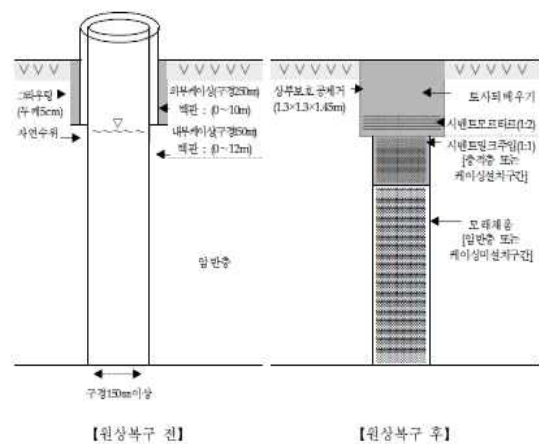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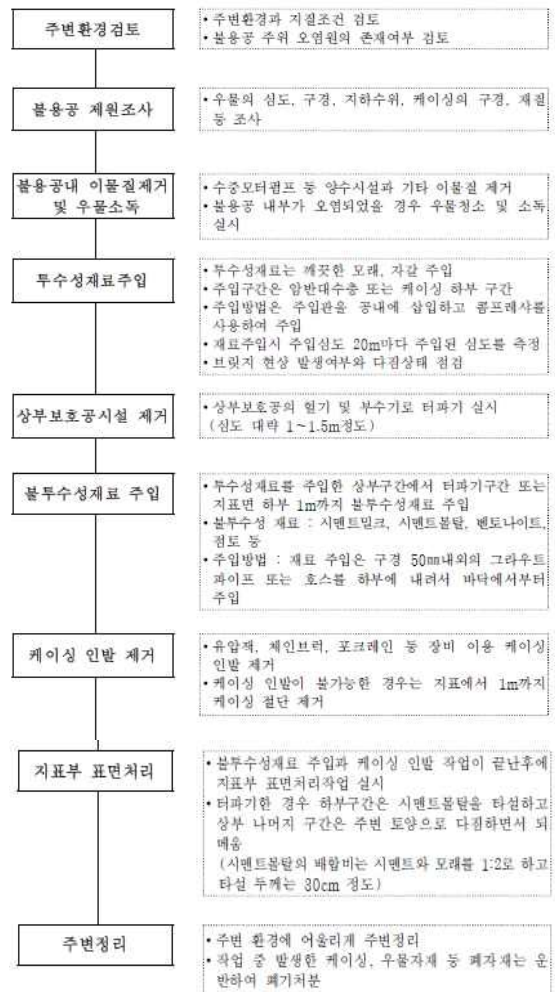


－ 부분 되매움(심도 300m 이상) 순서(유형7)



○ 일반층 대형우물

－ 전구간 되매움 순서(유형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연보의 발간 2. 지하수 계획, 지침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 3. 유출지하수 활용 등에 대한 기술지원 4.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외에 지하수 정보 활용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 ----- ----- -----.

1. (생략)

2. 원상복구계획서

② (생략)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법 제7조의3제3항과 영 제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1. (현행과 같음)

2. 원상복구계획서(이 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상복구계획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4호서식-----.

④ ----- 별지 제5호서식----- 발급해야 -----.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⑥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 제출해야 -----.

④ -----

----- 별지 제5호서식-----
----- 발급해야 -----.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
----- 별지 제8호서식-----.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9호서식-----

----- 제출해야 -----.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준공신고) ① 삭제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⑦ -----

----- 별지 제10호서식 -----

----- 발급해야 -----.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

----- 별지 제11호서식 -----

----- 제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준공신고)

② -----

----- 별지 제12호서식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
확인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
른다.

⑤·⑥ (생략)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
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 3. (생략)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
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
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
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
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④ -----
----- 별지 제13호서식-----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

① -----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은 조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유
출지하수의 발생현황 -----

-----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출
지하수 발생현황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
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
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
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
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
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
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
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2.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
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
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

----- 제출해
야 -----.

1. (현행과 같음)

2.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
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④ -----

---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출
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
해야 -----.

⑤ -----

---- 별지 제16호서식-----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17호서식-----
----- 발급해

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⑩ (생략)

<신 설>

야 ----.

⑦ ----- 법 제9조의2제2항-----

----- 않거-----

----- 제4항-----

---- 통보해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

---- 별지 제11호서식-----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시

<신 설>

<신 설>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전년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현황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⑬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 공사 완료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
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
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
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
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
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
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 별지 제19
호서식-----

--- 제출해야 -----.

② -----
--- 별지 제20호서식-----
----- 발급
해야 -----.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

-- 별지 제21호서식-----

--- 제출해야 -----.

----- 확인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별지
제22호서식-----

-- 제출해야 ----.

③ -----

----- 별지 제23호서식 -----
----- 받 -----
급해야 ----.

④ -----

----- 별지 제24
호서식-----

----- . 다만 법 제9조의4제
1항에 따른 굴착행위 후 법 제8
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
고를 하는 경우로서 원상복구할
대상이 없거나 원상복구를 완료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
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
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9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
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하
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
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
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
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

--- 별지 제25호서식-----
----- 발급해야 -----
--.

⑥ ----- 법 제9
조의4제5항-----
----- 제3항-----

통보해야 -----.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의 사후관리 등) ① -----

----- 별지
제26호서식-----

-----.

② -----

----- 별지 제27호서식-----

----- 제출해야
-----.

1. · 2.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8호서식-----
----- 발급해야 -----.

제9조의10(물공급 취약지역 등)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하여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 수자원 확보 등이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0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완료통보서에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① -----
----- 별지 제11호서식-----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별지 제30호서식-----

----- 발급해야 -----
--.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지정) 요청서에 따른다.

② (생략)

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이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

----- 별지 제31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

----- 별지 제32호서식-----.

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

----- 별지 제4호서식-----

-- 제출해야 ----.

② -----

----- 별지 제5호서식-

----- 발급해야 ----.

③ -----

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⑤ (생략)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① (생략)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에 따라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

----- 별지 제33호서식 -----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4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3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6항-----

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
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
청)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상복구 예
외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
류

2. (생략)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 삭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
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
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
청) -----

별지 제34호서식-----

--- 제출해야 -----.

1. ----- 측정망-----

2.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② ----- 별지
제35호서식-----

----- 기록·유지해야 -----

다.

③ (생략)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2조에서 이동

제21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보고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이동

제22조(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의2(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영 제6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

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2항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3항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4항에서 이동

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5항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3조제6항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이동(법 제16조제3항 위임사항 포함)

료되기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
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
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36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
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
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제23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
조제3항,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
준”이란 제26조 각 호의 기준을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2조의2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5조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6조에서
이동

말한다.

제23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별표 7과 같다.

제24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
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
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25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
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
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
자”라 한다)는 이 규칙제25조제
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기록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질측정기
록부에 작성하고 그 측정결과를

제24조(출입·조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
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의 등록)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3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
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하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 등록증”이라 한다)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
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6조(출입·조사공무원증) ---
----- 별
지 제43호서식-----.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의 등록) ① -----

----- 별지 제4
4호서식-----

----- 제출해
야 -----.
----- 별지 제45호서
식-----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생략)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7조제1항에서 이동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7조의2에서 이동

--- 제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46호서식-----.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9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제27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2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8조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9조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0조에서
이동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
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
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
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9조(측정망 운영 등) 법 제17
조제7항, 영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변동실
태조사를 위한 측정망의 설치기
준·측정망의 수와 설치시기·
측정망의 운영·측정방법 등 측
정망의 설치와 운영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수질검사 대상) 영 제29조
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이란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2조에서
이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세부 용도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제31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3조에서
이동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
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제35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
여는 제1항의 수질검사의 주기
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
항 전단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
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
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신청해
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
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하여야 하며,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島嶼)·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시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4조에서
이동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5조에서
이동

장·군수·구청장”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
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
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
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
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
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
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
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34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41

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

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청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

별지 제47호서식-----

제출해야 ----. -----

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
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
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4. (생 략)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
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
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인만 해
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
다.

1. 삭 제

---해야-----

---않는-----

-----해야-----.

2. ~ 4.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48호서
식-----

-----제출해야-----.

-----해야-----

-----않는-----

-----해야-----

---.

2. ~ 4. (생략)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생략)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2. ~ 4. (현행과 같음)

③ -----

위해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

----- 제출해야 -----
--.

제39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46호서식-----

--- 관리해야 -----.

제40조 (현행 제28조의2와 같음)

제41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삭제

⑥·⑦ (생략)

제30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처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6조에서 이동

----- 별지 제50호서식-----
----.

② -----

첨부해야 -----.

----- 별지 제51호서식-----

----- 첨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52호서식-----.

⑥·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

-----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

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삭 제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
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
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
다.

③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
청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삭 제

⑤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르고, 지하수정
화업등록증은 별지 제55호서식
에 따른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
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
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
여 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
다.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31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 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되,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시행규칙(안) 제46조로 이동하고,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7조를 통합

1. ~ 3. (생략)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7조제1호에서 이동

제44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 신청) -----
----- 별지 제56호서식-----

확인해야 ----.

제45조(토지출입증) -----
----- 별지 제57호서식-----.

제46조(수수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
검사 :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
액)

4. ~ 7. (생략)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7조제2호에서
이동

<신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7조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9.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
우: 4만5천원

10.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
록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
우: 2만7천원

② -----

-----.

-----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단, 4
호는 제외)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보고·조사 등) ① -----

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조사공무원은 해당 조사를 받을 자가 갖추어 둔 별지 제45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조사 일시·조사 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
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업 등록일을 기준
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실
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신 설> ※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1조에서 이동 제36조 (생 략)	현황, 위반사항의 결과를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실적 등의 제출·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와 같다. 제49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	---